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실손의료공제 전산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및 벌칙
규정 신설〉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9574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윤성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실손의료공제 전산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및 벌칙 규정 신설 ·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6. 29.
3. 회 부 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에 있어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협 공제사업에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협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수협 공제사업에 있어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공제계약의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및 제177조의2 신설).

②·③ (생략)

<신설>

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한다)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및 전산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이 경우 “보험”은 “공제”로, “보험계약자”는 “공제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공제자”로, “보험금”은 “공제금”으로,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로, “보험회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본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7조의2(벌칙)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138조제1항제5호¹⁾는 중앙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공제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공제사업은 조합이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료를 받아 일정기간 내에 미리 약정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는 사업²⁾으로, 다수의 가입자가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한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 제12조제1항³⁾은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협의 공제사업은 보험과 유사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보험업법」이 아닌 「수산업협동조합법」 관련 공제규정 및 감독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는 차이가 있음.

- 실손의료공제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약정된 범위에서 보전하는 공제로, 중앙회가 운영 중인 실손의료공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사업)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5. 공제사업

2) 「공제조합 공제사업감독기준」 제2조제1호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2조(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①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해운법」 제24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8조·제81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협 실손의료공제 유효계약 현황>

상품 수	유효계약 건수	가입금액
11개	3만 3,180건	1조 6,937억원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 종전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회사별 청구서류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등을 발급받은 후 이를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2023년 10월 「보험업법」이 개정되어 보험계약자 등이 의료기관에 보험금 청구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도입되었음.

보험업법(법률 제19780호, 2023.10.24. 개정, 2024.10.25. 시행)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 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의7(실손의료보험계약의 서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④ 보험회사(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전송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요양기관 등과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 현행법은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회가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실손의료공제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보험업법」 제102조의6에 따른 공제계약자의 서류 전송 요청권 및 의료기관의 전송 의무와 같은 법 제102조의7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의무가 수협 실손의료공제에는 적용되지 않음.

관련하여, 중앙회가 보험개발원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결과,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기관별 특별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음.

□ 개정안은 수협의 실손의료공제에도 「보험업법」의 청구 전산화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공제계약자 등이 의료기관에 청구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하고 중앙회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협 실손의료공제가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운영 주체 및 법적 형식은 다르나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전한다는 점에서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보장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협 실손의료공제의 가입자에게도 일반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보험업법」 제202조제3호의2와 같은 수준으로,

전산화 과정에서 가입자의 진료 및 의료비에 관한 민감정보가 처리되므로 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고, 보험과 공제에서 발생한 동일한 정보보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수준의 형벌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벌칙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동 개정안과 유사하게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이 실손의

료보험 성격의 급여에 대해서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준용하도록 2026년 2월 개정되어 202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한국교직원공제회법」(2026.8.20. 시행) 역시 전산시스템 업무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교직원공제회법(법률 제21356호, 2026.2.19. 개정, 2026.8.20. 시행)	
제26조(「보험업법」의 준용)	실손의료보험(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성격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실손의료보험계약”은 “실손의료보험 성격의 급여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급여계약자”로, “피보험자”는 “피급여자”로, “보험금”은 “급여금”으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본다.
제27조(벌칙)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12조제1항 단서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준용하면서 “금융위원회”는 “해양수산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험업법」 제102조의6제1항은 전자적 형태로 전송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2조의7제6항은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업무위탁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를 “해양수산부”로 보도록 하여 전송 대상 서류 및 구축·운영 기준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별도로 정하려는 것인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는 보험회사와 공제기관이 동일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표준화된 서류를 전송받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와 제도 운영의 일관성 측면에서 수협의 실손의료공제에도 금융위원회가 정한 전송 대상 서류와 시스템 구축·운영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6조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준용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교육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치환하지 않고 있음.

둘째, 안 제12조제1항 단서는 「보험업법」의 “보험회사”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2조제5호4)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후 각 조문에서 해당 약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12조제1항 단서 중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중앙회”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한국교직원공제회법」은 제2조5)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를 “공제회”로 약칭하고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법 제26조에서 “보험회사”는 “공제회”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개정안을 통하여 보험회사와 공제사업 간 이용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제금 청구절차의 간소화로 공제계약자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수협중앙회는 개정안을 통해 수협 실손공제 가입자 등이 전자적으로 간편하게 실손의료비 공제금을 청구함으로써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벌칙 규정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⁶⁾

5.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조(법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6)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

문 의 처
02)6788-5427

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